

## ① 개정개요

개정 전	개정 후
<input type="checkbox"/> 공공매입임대주택 지방세 감면	<input type="checkbox"/> 감면대상자 확대 (§31⑥)
<input type="radio"/> (감면대상자) LH, 지방주택공사	<input type="radio"/>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 추가
<input type="radio"/> (감면대상) 매입하여 임대로 제공하는 주택등(부속토지 포함) ※ 단독주택, 다중주택, 다가구주택, 아파트, 연립주택, 다세대주택, 오피스텔(주거용), 기숙사	<input type="radio"/> 현행과 같음
<input type="radio"/> (감면율) 취득세 25%, 재산세 50% 감면	<input type="radio"/> 현행과 같음
<input type="radio"/> (일몰기한) <u>2027.12.31.</u>	<input type="radio"/> 현행과 같음

## □ 개정내용

- 현재 LH·지방주택공사의 공공매입임대주택 감면 중(취득세 25%, 재산세 50%), HUG에서 '24년부터 동일한 임대주택 사업\* 추진
 

\* (든든전세주택) 전세금반환보증에 따라 대위변제한 주택을 HUG가 경매로 낙찰 받거나, 협의매수하여 무주택자에게 시세의 90% 수준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
- 감면대상에 HUG를 포함하여 LH 등과 과세형평성 제고 및 주로 취약계층이 입주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

## □ 적용요령

-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(부칙 §1)
-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(부칙 §2)